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나12332 판결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나1233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0가단508397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김상수, 신혜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기, 담당변호사 강재룡

피고, 항소인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임혜진, 양석조

변론종결 2024. 3. 22.

판결선고 2024. 4. 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0가단508397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N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의 밑에서부터, 제12행의 “원고들은 G와 원고들이 장남인 I에게”를 “G와 원고들이 I에게”로, 제2행의 “각 기재에”를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R의 증언에”로 각 고치고, 제8쪽 제7행의 “G와 원고로부터”를 “G와 원고들로부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인재, 판사 이의진, 판사 김양훈